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 회수담당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아현	042-480-8772	0502-604-7992
회수사유	변경 미신고 제품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경방신약(주)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27		
전화번호	041-751-5650	FAX번호	032-822-4325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분류	일반의약품
주성분	작약, 계지, 감초, 갈근, 마황, 대추, 건장		
효능효과	감기, 코감기, 두통, 어깨결림, 근육통, 손과 어깨통증		
포장단위	75mL/포 x 10ea	제조번호(유효기간) 20001(2023.06.07.), 20002(2023.06.10.), 20003(2023.06.13.), 20004(2023.09.19.), 20005(2023.09.20.), 20006(2023.09.21.), 20007(2023.09.22.), 20008(2023.09.23.), 20009(2023.10.14.), 20010(2023.10.17.), 20011(2023.10.18.), 20012(2023.10.19.), 20013(2023.10.20.), 20014(2023.11.04.), 20015(2023.12.06.), 21001(2024.01.04.), 21002(2024.01.07.), 21003(2024.01.31.), 21004(2024.01.31.), 21005(2024.02.0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동 제품이 회수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

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동 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 9. 1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 회수담당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아현	042-480-8772	0502-604-7992
회수사유	변경 미신고 제품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경방신약(주)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27		
전화번호	041-751-5650	FAX번호	032-822-4325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경방쌍화탕액	분류	일반의약품
주성분	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육계, 감초, 생강, 대추		
효능·효과	허약체질, 피로회복, 과로, 자한(自汗, 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 병중병후(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		
포장단위	75mL/포 x 10 ea	제조번호(유효기간) 20001(2023.10.10.), 20002(2023.10.11.), 20003(2023.10.12.), 20004(2023.10.13.), 20005(2023.12.01.), 20006(2023.12.08.), 20007(2023.12.09.), 20008(2023.12.20.), 21001(2024.03.0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동 제품이 회수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동 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	------------	-------------	-------------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 9. 1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생관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 회수담당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아현	042-480-8772	0502-604-7992
회수사유	변경 미신고 제품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경방신약(주)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27		
전화번호	041-751-5650	FAX번호	032-822-4325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삼소천액(삼소음액)	분류	일반의약품
주성분	인삼, 자소엽, 전호, 반하, 갈근, 복령, 진피, 길경, 지각, 감초, 건장, 대추		
효능·효과	감기에 의한 두통, 발열, 기침		
포장단위	75mL/포, 10포(75mL/포 × 10ea)	제조번호(유효기간)	
		20001(2023.10.24.), 20002(2023.10.26.), 20003(2023.10.27.), 20004(2023.10.31.), 20005(2023.11.0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동 제품이 회수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동 의약품등을 반쯤하고 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	------------	-------------	-------------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 9. 1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 회수담당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아현	042-480-8772	0502-604-7992
회수사유	변경 미신고 제품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경방신약(주)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27		
전화번호	041-751-5650	FAX번호	032-822-4325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소페탕액(소청통탕액)	분류	일반의약품
주성분	반하, 작약, 마황, 건강, 감초, 계지, 세신, 오미자		
효능효과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콧물, 묽은 가래를 수반하는 기침, 비염(코염)		
포장단위	75mL/포 x 10 ea	제조번호(유효기간) 20001(2023.10.04.), 20002(2023.10.05.), 20003(2023.10.06.), 20004(2023.10.21.), 21001(2024.02.0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동 제품이 회수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등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동 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	------------	-------------	-------------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 9. 1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